

#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1900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1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박희승 · 한민수  
백선희 · 김기표 · 김주영  
박정현 · 안호영 · 박민규  
임호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3천만 원의 상한액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음. 특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, 물질적 손실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보상금 상한은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실

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5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전단 중 “3천만원”을 “1억원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이 청구되어 재판 또는 심사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보상의 내용) ① ·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조(보상의 내용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<u>3천만원</u>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.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. | ③ -----<br>-----<br>----- <u>1억원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④ ~ ⑦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